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9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이학영

김태선 • 박 정 • 박상혁

이용우 • 박균택 • 김병기

허성무 · 양문석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 2 및 제41조).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자가"를 "자가"로,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제33조의3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자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8호 중 "제25조의2제2항"을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 명령) ① (생 략) 명령)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일정비율 이상 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 품 · 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가 제33조의3에 따른 고시를 지 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자에게 고 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 제1항 및 제2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 자가 -----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 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 - 지침 및 고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 지침 및 고시를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 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의2. (생략)
- 8. <u>제25조의2제2항</u>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 16. (생략)
- ③ ④ (생 략)

_	_	_	_	_	_	_	_	_		_			
													•

- 1. ~ 7의2. (현행과 같음)
- 8. <u>제25조의2제3항</u>-----

- 9. ~ 16.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